

[환경사범수사사례]

폐기물 부적정보관 행위

자료제공 : 충청북도

I. 사건의 개요

1. 사건의 발단

2002. 9.23 12:30분경 주민으로부터 충주시 ○○동 소재○○주식회사 충주점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어 환경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,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여 발생된 침출수가 우수관로를 통하여 하천으로 유출되는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사실을 확인함

2. 수사경위

음식물류 폐기물 등 폐기물의 배출 및 보관장소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준수 여부를 조사

3. 수사결과

동 사업장은 의류, 피혁류, 완구류(완농품 제외), 식품류(제과업) 및 기타 각종 일용품의 제조, 가공 및 도산매에 관한 사업 등을 하는 업체로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식물찌꺼기 등 오염물질이 묻어 있는 폐합성수지(비닐류) 4톤 정도를 컨테이너박스 및 우수관거 상부에 보관하여 발생된 물량미상의 침출수가 사업장 부지내 우수관거를 통하여 외부로 유출시켜 하천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사실을 적발함

II. 사건 수사추진 일지

2002. 9. 23 : 주민 신고 접수에 따라 ○○주식회사 충주점의 폐기물 보관상태 등



환경관련법 준수여부를 점검시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사항을 적발

- 2002. 9. 23 : 범죄인지보고(사법경찰관 시장)
- 2002. 9. 23 : 출석요구 통보(사법경찰관 피의자)
- 2002. 10. 10 : 피의자 신문
 - 피의자 신문조서, 피의자주거진술서, 수사자료표작성
- 2002. 10. 10 : 범죄경력조회(사법경찰관 충주경찰서)
- 2002. 10. 10 : 수사자료표 송부(경찰청 과학수사과)
- 2002. 10. 11 : 수사결과보고(사법경찰관 시장)
- 2002. 10. 17 : 의견서 작성(사법경찰관)
 - 발생통계원표, 검거통계원표, 피의자통계원표 작성
- 2002. 10. 18 :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송치
 - 사법경찰관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 사무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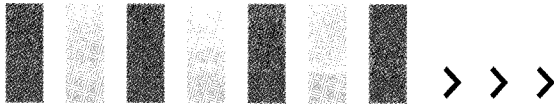
III. 수사활동 상황

1. 사건의 인지

2002. 9.23 12 : 30분경 주민으로부터 충주시 ○○동 소재 ○○주식회사 충주점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어 환경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,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식물찌꺼기 등 오염물질이 묻어 있는 폐합성수지(비닐류) 4톤 정도를 콘테이너박스 및 우수관거 상부에 보관하여 발생된 물량미상의 침출수가 사업장 부지내 우수관거를 통하여 외부로 유출시켜 하천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사실을 인지함

2. 사건의 입건

○○주식회사 충주점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보관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식물찌꺼기 등 오염물질이 묻어 있는 폐합성수지(비닐류) 4톤 정도를 콘테이너박스 및 우수관거 상부에 보관하여 발생된 물량미상의 침출수가 사업장 부지내 우수관거를 통하여 외부로 유출시켜 하천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사실을 적발하여 동 사업장 충주점 점장 ○○와 법인인 ○○주식회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함



[환경사범수사사례]

3. 범죄사실(수사결과)

○○주식회사는 의류, 피혁류, 완구류(완농품 제외), 식품류(제과업) 및 기타 각종 일용품의 제조, 가공 및 도산매에 관한 사업 등을 하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지붕 및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서 폐기물을 보관하여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,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식물찌꺼기 등 오염물질이 묻어 있는 폐합성수지(비닐류) 4톤 정도를 콘테이너박스 및 우수관거 상부에 보관하여 발생된 물량미상의 침출수가 사업장 부지내 우수관거를 통하여 외부로 유출시켜 하천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것임

4. 사건의 송치

이에 우리시에서는 2002. 10. 18. 피의자 ○○와 법인인 ○○주식회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관할 지검(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)에 불구속 기소함.

Ⅳ. 수사결과와 분석·평가

1. 총 평

충주시 ○○동 소재 ○○주식회사 충주점에서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주민신고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를 현지 확인한 결과,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식물찌꺼기 등 오염물질이 묻어 있는 폐합성수지(비닐류) 4톤 정도를 콘테이너박스 및 우수관거 상부에 보관하여 발생된 물량미상의 침출수가 사업장 부지내 우수관거를 통하여 외부로 유출시켜 하천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사실을 적발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관할지검에 불구속 기소함

2. 잘된 점

환경오염 포상금제도에 대하여 언론매체 등을 활용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및 신고정신이 제고되었다고 보이며, 현지 점검시 침출수의 추가적인 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실내로 옮기는 등 응급



조치를 강구하여 수질보전에 기여하였으며 현장 사진확보 등 증거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수사를 할 수 있었음

3. 미흡한 점

업소 관계자의 부주의 및 오염취약시기(추석 연휴) 중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치 않고 부적정하게 보관함으로써 발생된 침출수가 유출되어 적발된 사항으로 점검시 침출수 유출량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

4. 향후 유사사건 수사시 보완·반영할 사항

앞으로는 사건을 인지하였을 때 유출된 경위, 시간, 양 등을 최대한 명확히 조사하여 위반확인서에 명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

V. 참고사항

1. 수사시 착안사항(수사 노하우 등)

환경오염 신고에 따른 현지 확인 조사시 부적정하게 보관된 폐기물에서 발생된 침출수의 발생원인 및 유출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 위법 사항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음

2. 수사과정 중에 드러난 특이사항

추석연휴를 전후한 환경관리가 취약하고 사회분위기가 이완된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환경오염 취약시기(설·추석 연휴, 갈수기, 장마철 등)에는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 및 감시활동이 크게 요구됨

3. 기 타

동 사건의 경우 사업자가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발생되지 않을 오염사고로써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◀